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20 선고 2020가합4108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 주식회사와 D 사이에 체결된 종신보험(보험증권번호 E,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2.자 피보험자 망 F의 사망시 D에서 피고로의 수익자변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673,8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 26.부터 2017. 8. 31.까지 D에게 돈을 대여하여 잔여 원리금 합계 269,673,822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는 2016. 8. 24.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부친 F를 피보험자로, D를 사망 시 수익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8. 5. 2.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사망보험금 558,086,350원을 수령하였다.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가 2016. 8. 24. C 주식회사와 사이에 F를 피보험자로, D를 사망 시 수익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7. 1. 5.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D에서 F로 변경된 사실, F가 2018. 5.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 시 수익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는 점(상법 제733조 제1항)을 더하여 보면, F가 2018. 5. 2.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는 당시 보험계약자인 F의 행위일 뿐 채무자 D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원고는 2017. 1. 5.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F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형식적인 명의변경이었을 뿐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는 D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정한 판사 서지원 판사 한승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

판결경정결정

사건 2020가합41086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B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20가합41086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21. 5. 20.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1항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를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9.

재판장 판사 곽정한 판사 서지원 판사 한승진